2002 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

審 査 報 告 書

2001. 12. 13
총 무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2001. 11. 20

나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2001. 11. 22

라. 上程日字 : 2001. 12. 7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會計課長 崔春煥)

가. 提案理由

○ 금년도에 5구좌의 콘도회원권을 구입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

○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의 추가 확보 필요성 대두

나. 主要骨子

○ 콘도회원권 매입 : 7구좌(소요예산액 : 200,000천원)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o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o 지방자치단체장은 1억원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함.

o 콘도회원권은 분양제와 회원제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유사시 채권확보등 투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무구조가 견실한 콘도사를 선정하여 분양을 통한 공유지분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o 다만 금년도에 구입한 5구좌의 이용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구입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수정가결

- 수정안 별첨

2002.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대한 수정안

2002.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『7구좌』를 『5구좌』로 『200,000천원』을 『145,000천원』으로 한다

2002.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공유재산 관리계획서 (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)의 수량 7구좌 금액 200,000	공유재산 관리계획서 (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)의 수량 5구좌 금액 145,000